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審 查 報 告 書

2001. 10. 9
의회운영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發議日字 : 2001. 9. 25.
- 나. 發議者 : 이철수 의원의 5인
- 다. 回附日字 : 2001. 10. 4
- 라. 上程日字 : 2001. 10. 9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李完福 議員)

가. 改正理由

- 2001. 9. 20자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, 일부 실·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“종합민원실”은 “종합민원과”로 명칭변경(안 제3조제2항제2호).
- 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”의 신설에 따라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소관으로 정함(안 제3조제2항제2호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,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으로
-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226 호
의 결	2001. 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철수 의원외 5 인
발의년월일	2001. 9. 25.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9. 25.
발 의 자 : 이철수의원의외 5 인

□ 개정이유
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일부 실·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“종합민원실”을 “종합민원과”로 명칭을 변경함 (안 제3조 제2항 제2호)
- 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”의 신설에 따라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(안 제3조 제2항 제2호)

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54조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, 제5조, 제13조, 제15조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종합민원실”을 “종합민원과”로 하고, 시립도서관 다음에 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총무위원회</p> <p>기획감사담당관실 · 문화공보담당관실 · 자치행정과 · 세무과 · 회계과 · 종합민원 실 · 사회여성복지과 · 민방위재난관리과 · 지역경제과 · 보건소 · 문화회관 · 시립도 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좌동)</p> <p>2. 총무위원회</p> <p>----- ----- 종합민원 과 · ----- ----- -- ·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 는 사항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